

[ ]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
[ ]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 
변경 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<input type="radio"/> 대표자 변경,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: 7일 <input type="radio"/> 비료명칭의 추가: 4일 <input type="radio"/> 그 밖의 사항 변경: 즉시
------	-----	------	--

[ ]등록 [ ]신고	번호	제 호
----------------	----	-----

신고인	법인(상호)명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 소	전화번호

신고내용	변 경 항 목	변 경 전	변 경 후

변경사유	
------	--

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제4항·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·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·제11조제1항에 따라 ([ ] 비료생산업 등록사항, [ ] 비료수입업 신고사항)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[ ]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[ ]비료수입업 신고증 1부 2. 보증성분·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. 제조공정·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. 재배시험성적서 1부(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) ※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